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의거하여, 이사유는항소사건표번호. 의항소심판결정에따른(원고의) (고용주의)항소를검토하기위해평가위원회 ("Board")에제출되었습니다.기록증거가완전하게검토되었습니다.

실업 보험 혜택을 위한 분쟁 클레임을 포함한 케이스에 대한 궁극적 사실 발견자로서 위원회는 항소 심판이 발견한 사실이 적절한 증거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것으로 적용한다고 결론 내립니다.위원회는 또한 항소 심판이 발견된 사실에 고용 안전법 (N.C. Gen.Stat. §96-1 이하 참조)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결과적 결정은 법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 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부터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하여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부터 실업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평가위원회위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항소에참가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_\_\_\_\_  
위원장



고위당국결정번호

3 페이지 중 2

**주의:** 이고위당국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30)일이 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당국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 부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http://www.des.nc.gov)를 통해 고용 안전 부 웹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사법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고위당국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어스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고위당국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10)일이 내에 고용 안전 부(“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10)일이 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이해당사자에게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실업보험관리자로일하는제 3 자의개인포함)에정의된법정대리인은면허가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96-  
17(b)에따라면허가있는변호사가감독한사람이어야합니다.변호사감독의통지및/  
또는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따라서면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사법절차의법적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준수하여야합니다.

**중요 - 다음장을보십시오**

고위당국결정번호.

3 페이지중 3 페이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의거하여,  
당사자에게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당사자에게제공되어야하는모든서류또는정보는법정  
대리인에게만발송됩니다.당사자의법정대리인에게제공되는모든정보는당사자에게직접  
발송된것과동일한효력과영향을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이후에제기된클레임의경우,원고는이후항소에서취소된행정또는사법  
결정에서수령된급여의상환대상이됩니다.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귀하는 N.C. Gen. Stat. § 96-  
18(g)(2)에의거하여혜택을초과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이고위당국결정에의해초과지급이이  
루어진경우,귀하는해당부서의혜택무결성/  
혜택지불통제섹션으로부터초과지급통지또는초과지급결정통지서를별도의우편으로받게  
됩니다.초과지불통지또는초과지급결정통지서는다른것들과더불어,귀하의초과지급액수  
와적용되는처벌을명시합니다.귀하가초과지급에의의를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위에  
제시된것과같이,그리고노스캐롤라이나법에따라,  
이고위당국결정의사법검토청원을제기하는것뿐임을알려드립니다.귀하의청원서에서,귀  
하는항소가(1) 실격또는자격의문제및/ 또는(2)  
귀하가초과지급을받았음에대한최종결정에대한것인지여부를명시해야합니다.

항소제기:

결정전달: